

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(건설업 등록기준) 및 동법시행령 제13조(건설업 등록기준)를 위반(기술인 미달)한 전문건설업에 대하여 영업정지 5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영업정지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영업정지사유(기술인 미달)에 대한 보완(소명)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(건설업의 등록말소 등) 제3의2호 의거 등록말소 처분 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. 7. 2.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고

1. 위반업체

상호 (법인번호)	대표자	소재지	등록업종 (업종등록번호)
(주)에이피씨웍스 (110111-*****)	안**	을지로 114-6,307호 (을지로3가, 흥원빌딩)	실내건축공사업 (중구**-**-**)

2. 위반 및 처분내역

위반내용	위반근거	처분	처분근거
영업정지기간 종료 전 등록기준 미달사유 미보완	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별표2	등록말소	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의2호

3. 공고기간 : 2024. 7. 2.(화) ~ 2023. 7. 16.(화)

4. 공고근거 :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3

5. 공고방법 : 건설업관리시스템(CIS) 공시 및 구홈페이지에 게재

6. 문 의 처 : 중구청 건설관리과 도로보상팀 (☎ 02-3396-6022). 끝.